

2013. 9. 10.(화)

“道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충 청 남 도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 “道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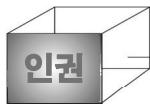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 「道 인권기본계획」 수립이 현실 적용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체계적·종합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사전 전문가 의견 수렴
-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위원 대상 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13. 9. 10.(화) 10:30 ~ 15:00
- 장 소 :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1층)
- 참석인원 : 25명
(도민인권증진위원 15, 서울시 인권담당공무원 1, 국가인권위원회 1, 도 공무원 4, 충남발전연구원 4)
- 주요내용
 - 도민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내용 발표 및 시사점
 - 조사를 바탕으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도출 토론
 -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위원 인권감수성 향상 위한 인권 특강
 - 다른 지역 인권기본계획 수립 사례 및 충남에 주는 함축적 의미
(서울시 인권기본계획 사례, 각 지역의 인권도시계획의 사례)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진행표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0:20	10:30	10'	◆ 등록	
10:30	10:35	5'	◆ 개회	위원장 우주형
10:35	11:05	30'	◆ 인권 특강 1 (지역사회에서 '인권'의 의미)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강현수
11:05	11:35	30'	◆ 인권 특강 2 (인권행정의 제도화 및 이행과정 에서의 고려사항) 중 식	국가인권위원회 (법제팀장 이발래)
11:35	12:05	30'	◆ 사례발표 (서울시 인권기본계획 수립 과정)	서울특별시 (인권정책팀장 정정길)
12:05	13:20	75'	◆ 중식	
13:20	14:30	70'	◆ 주제발표 (충남인권의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참석자 질의·응답)	충남발전연구원 이수철
14:30	14:40	10'	◆ 휴식	
14:40	16:00	80'	◆ 종합토론 및 정리	위원장 우주형
16:00			◆ 폐회	

지역사회에서 인권의 의미

2013. 9. 10. 충남 인권 워크샵
강 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

<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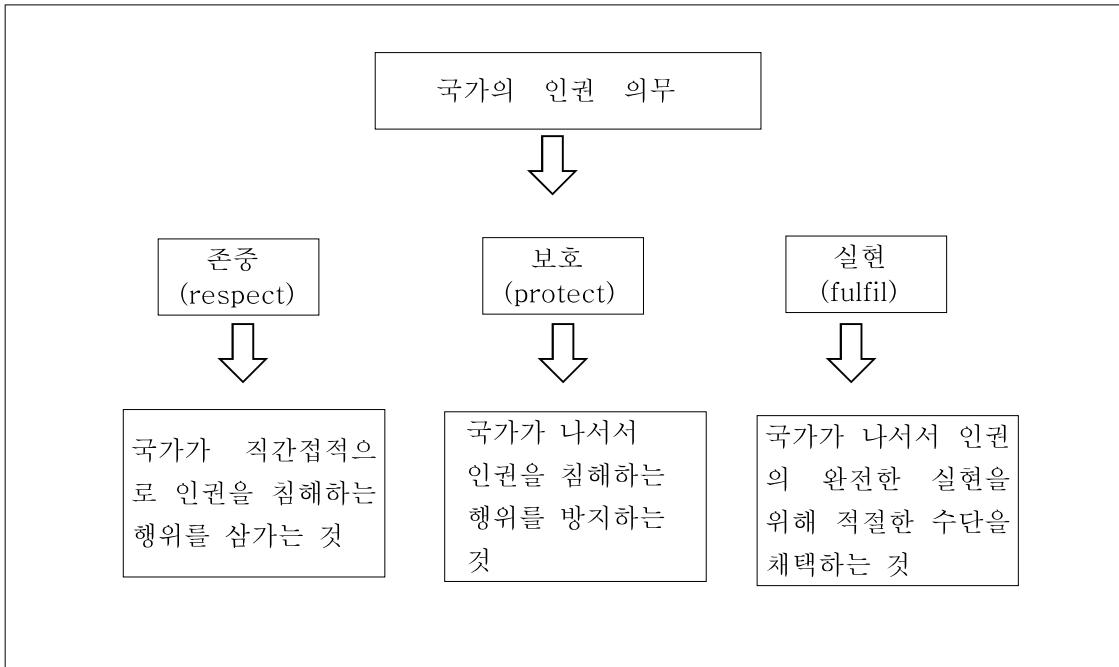
1.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
2.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 시책 필요성
3. 지역 차원의 인권 거버넌스 만들기
4. 지역 인권정책기본계획과 인권실태조사
5. 지방정부 인권 시책 및 거버넌스 성공의 조건
6. 현안과 당면 과제

1.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인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각 개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하고, 공동체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근대 이후부터 인권은 ‘시민권 (citizenship)’이란 형태로 국가에 의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20세기 들어와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복지국가 형태를 갖추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국가가 우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사회권 해설에 따르면, 인권 보장에 있어서 국가의 의무는 크게 세 가지, 즉 존중(respect), 보호(protect), 실현(fulfil)의 의무로 구분된다.

<그림 1> 인권 보장에 있어서 국가의 세 가지 의무



출처 : OHCHR, 2008, Fact Sheet No. 33.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11 그림 일부 수정

2.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 시책 필요성

그런데 지방정부가 인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적 차원에서는 유엔이나 국제기구들이 세계인권선언 같은 국제 규범을 통하여,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개별국가들이 헌법과 법률을 통하여 인권 보장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말이다.

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주민과 가깝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국제기구나 국가보다 지방정부가 인권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주민들과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1948년 입장이 서로 달랐던 세계 각국의 합의를 유도하여 세계인권선언을 제정 선포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던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설명했다.

“결국 보편적인 인권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집 가까운 작은 장소들에서 시작합니다. 너무 가깝고 너무 작아서 세계의 어떤 지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입니다. 인권이 시작되는 곳이 각 개인들의 세계, 그가 살고 있는 동네, 그가 다니는 학교나 대학, 그가 일하는 공장, 농장, 사무실입니다. 이런 곳이 바로 모든 남성, 여성, 어린이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정의, 평등한 기회, 평등한 존엄성을 추구하는 장소입니다. 인권이 이런 곳에서 의미를 가질 수 없다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집 가까운 곳에서 인권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일치된 행동이 없다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에서 진보를 찾는 헛수고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의 존엄성은 우리 모든 시민들의 손에, 우리 모든 지역사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엘리노어 루즈벨트, 1958년) ¹⁾

위 내용은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가 1958년 세계인권선언 10주년 기념행사에서 행한 연설문의 일부이다. 이 연설이 이루어진 자리는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의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행동 지침서를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그 지침서의 제목이 ‘당신의 손에 (In Your Hands)’ 였다. 세계인권선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손에 있어서, 그 내용을 우리 이웃과 함께 토론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UN같은 국제기구보다, 중앙정부보다, 우리와 좀 더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가 인권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핵심적 인권이다. 그리고 이런 참정권을 일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방정부이다.

나) 지방정부가 상당히 많은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권을 중시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지방정부도 국가의 일원이며, 국가의 인권 관련 업무 중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보호의 의무가 국가에 있다고 할 때, 이 국가가 중앙정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정부도 당연히 포함된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정부의 업무의 많은 부분이 분권화되어 지방정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특히 교육, 문화, 주거, 의료, 복지 등과 관련된 경제적·사회적 권리 영역의 업무들은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핵심인 참정권, 재산권 등도 지방정부와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사람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된 인권 보장의 책임을 지

1) 이 연설문의 전문 출처는 다음과 같다. Roosevelt, Eleanor, 1958. "In your hands: A Guide for Community Action for the Ten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ttp://www.udhr.org/history/inyour.htm>) 2013년 2월 접속)

방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 책임과 연대의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역이 유리하다.

인권은 사람의 권리이지만, 이 권리에는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 그리고 이 책임과 의무는 국가 기관,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과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일상생활을 함께 공유하는 지역 단위에서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분담하는 연대의 공동체를 구성하기가 용이하다. 아무리 정보통신이 발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번도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생활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를 꾸려나가기가 훨씬 용이하다.

3. 지역 차원의 인권 거버넌스 만들기

인권이 인간의 권리이므로 인권의 주체는 인간이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실천할 때 지역 속에서 인권이 꽂 필수 있다. 인류 역사에서도 인권의 증진은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투쟁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인권 침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인권 요구를 적극 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이들의 요구에 공감하고 이들을 목소리를 대변해 줄 사람들도 필요하다. 소설과 영화로 널리 알려진 ‘도가니 사건’의 경우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들이 자신의 이런 상황을 외부로 알릴 통로가 막혀있었다. 인권침해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고 또 내더라도 묵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관심과 감수성을 가지고 이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지역의 모든 인권 상황을 챙길 수는 없다. 따라서 주민을 대신하여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실행기구가 필요하다. 자치단체는 주민들을 대신하여 지역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임무를 위임받았을 뿐 아니라, 국가의 일부로서 인권 보장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인권 실행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자치단체의 업무 중 인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업무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인권 업무는 자치단체 모든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만 인권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권전담 부서가 반드시 자치단체 내부에 있어야 한다. 이 인권전담 부서의 역할은 타 부서의 인권 관련 업무를 지원, 조율하는 업무와 함께, 별도의 독자적인 인권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주민 인권상담 등 인권전담 부서가 자치단체 내부에서 잘 하기가 쉽지 않은 업무는 외부에 별도의 센터 형태의 조직을 꾸려나갈 수 있다.²⁾ 주민들의 인권 침해 조사 구제 기능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인권

옴부즈만을 둘 수도 있다.

그런데 인권 실행기구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교감 속에 운영되어야 한다. 즉 민관 인권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 집행부를 연결하는 기구, 즉 지역 단위 민관 인권 거버넌스 운영 조직이 필요하다. 지역 단위 인권 거버넌스를 책임지면서 동시에 지역의 인권 활동을 전반을 책임지는 조직이 바로 지역 인권위원회이다. 지역 인권위원회는 중앙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슷한 역할을 지역에서 수행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지역 차원의 인권 증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 인권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고, 이들에게 지역 차원의 인권 증진 역할을 부여하고,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책임성, 그리고 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지역 차원의 인권 증진 실현 여부의 관건이 된다. 인권위원회가 지역 단위 인권 거버넌스의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회 위원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 인권위원회 위원은 높은 인권 의식과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인권 취약계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위원회 위원이 너무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조직, 가령 인권 시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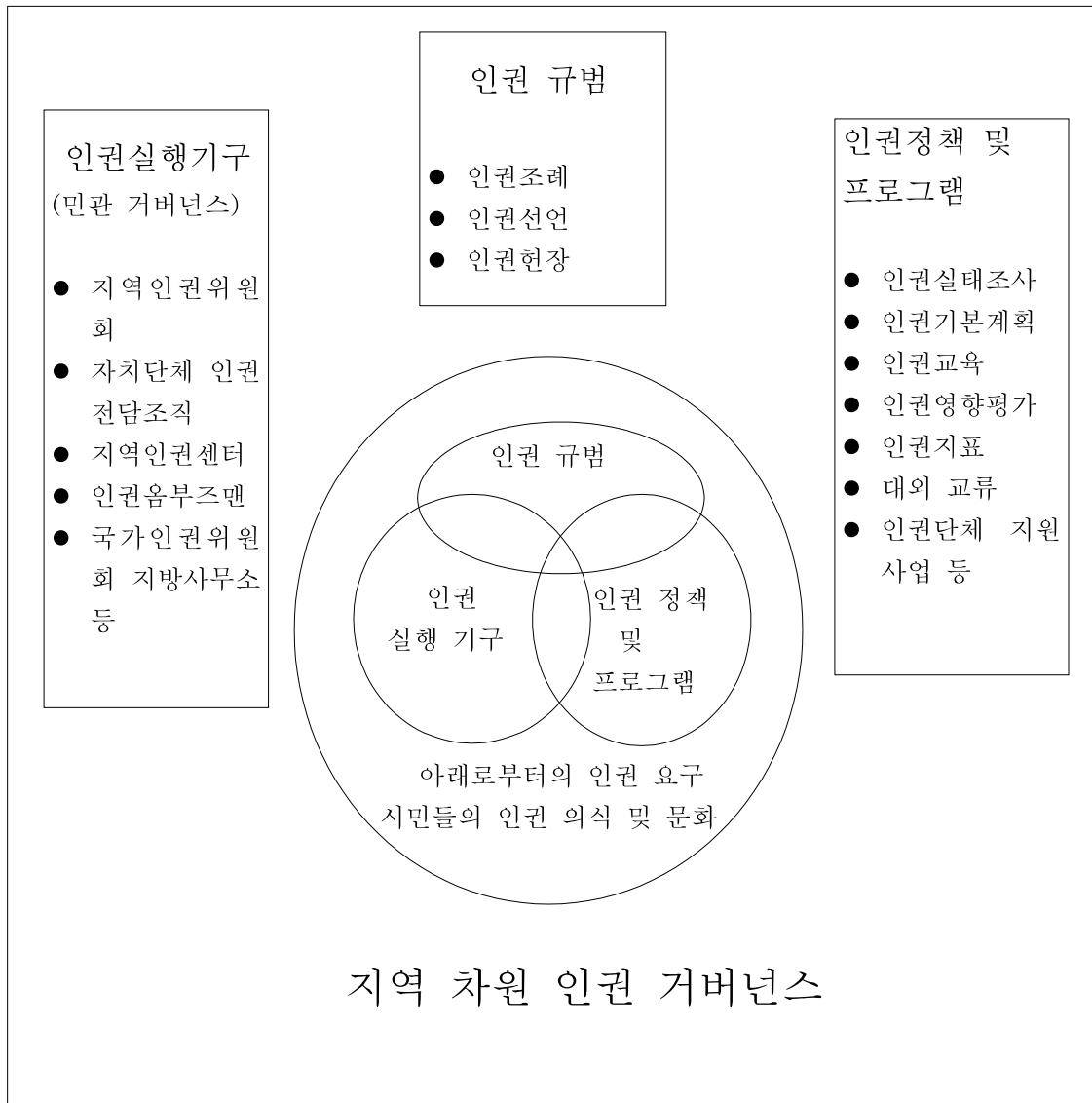
자치단체 인권전담조직, 인권센터, 인권 옴부즈만 등과 같은 직접적 인권실행기구가 아니더라도 주민을 대변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도 산하에 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기업, 지역 학교, 지역 언론 등 지역의 민간 기구, 검찰, 경찰, 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사무소 등 지역 소재 국가기구도 지역의 중요한 인권 활동 주체로서 각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구성되는 인권실행기구가 주민들의 인권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영 집행하게 된다. 그런데 인권실행기구를 운영하려면 조직과 예산, 전담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인권 규범이 필요하다. 지역 단위 인권 규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역 인권 조례이며, 지역 단위 인권 헌장이나 인권 선언 등도 지역 인권 규범이 된다. 인권 규범은 인권실행기구가 수행하는 인권 정책 및 프로그램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결국 지역 단위의 인권 거버넌스는 주민들의 인권 의식과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직접적으로 인권 활동을 수행하는 인권실행기구, 이 인권실행기구가 수행하는 인권 정책 및 프로그램, 이 정책 및 프로그램의 원칙과 방향과 제시해 주는 인권 규범으로 구성된다. <그림 2> 는 인권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를 <그림 3> 은 주요 인권 주체를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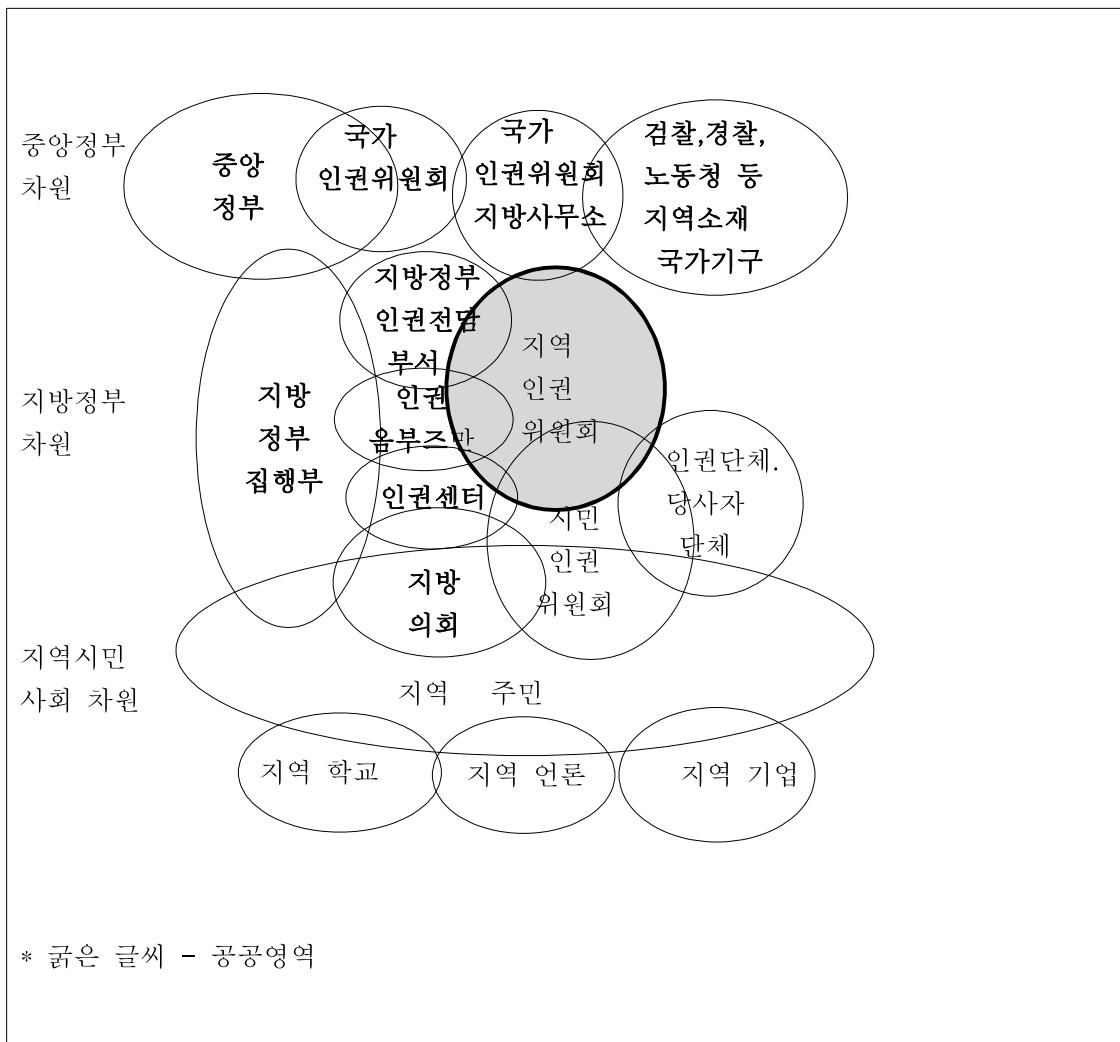
2) 인권 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지역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지역 내 인권단체들이 인권 센터 기능을 대행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자체의 인권 전담부서가 인권 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 주민 인권 상담 등 인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인권전문가를 전담 인력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

< 그림 2 > 인권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



출처 : 이성훈(2012) 등을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

< 그림 3 > 지역단위 인권 거버넌스의 주요 주체



4. 지역 인권정책기본계획과 인권 실태 조사

현재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바탕으로 하여, 5년을 주기로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³⁾을 수립 공표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지역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지방정부가 그 지역에서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수

3) NAP는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의 약자이다.

립하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지역 차원의 인권 정책의 방향과 아울러 각 부문별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의 목적은 지역 내 소수자 및 인권 취약계층 인권 보호,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인권 관련 시책 간 연계 강화, 인권 정책 인프라 구축, 인권 친화적 문화 육성 등이다. 이 계획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인권 실태 조사 및 현실 진단,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 우선 시행이 필요한 핵심 과제 제시, 각 부서별 분야별 세부 과제 제시, 이를 위한 계획 실행 조직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꼭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능한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 인권취약 계층별로, 또 주거권, 보행권, 환경권 등 각 권리별로 중장기 인권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지방정부의 조직과 예산 등 가용 자원을 제대로 배치할 수 있게 하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각 자치단체의 인권기본조례에서는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역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실제 수립된 곳은 많지 않은데, 2011년 광주광역시와 2012년 울산광역시 동구가 계획을 확정 공표하였으며, 서울시가 2012년부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러한 지역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사문화되지 않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 수립과정 부터 민주적이고 인권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 따라서 행정이 주도하면서 형식적인 공청회 한두 번으로 시민의견 수렴을 마칠 것이 아니라, 인권단체, 당사자단체, 인권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의 참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계획 수립과정 자체가 인권교육의 장, 민관 거버넌스, 부서간 협력의 시범 무대로 삼아야 한다.

둘째, 지역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계획 수립 과정 속에 포함되거나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인권 실태조사는 제대로 된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인권 영역을 다 조사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한정된 예산이나 인력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시급하거나 의미 있는 특정 분야에 집중해서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높을 것이다.

셋째, 수립된 계획 내용이 현실적이고 집행가능해야 한다. 추상적 내용이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이상적 내용으로 계획이 세워질 경우 훌륭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부적인 추진 체제와 실행예산 조달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계획 수립과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서 인권전담부서의 기획 및 조정 역할과 아울러, 다른 부서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계획을 주관하고 집행할 전담 부서 및 직원과 함께, 여러 부서가 각각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인권 업무들을 조율할 수 있는 행정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이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하여 인권 업무가 인권 전담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자치단체 모든 부서가 함께 협력

해서 수행하는 일이라는 점을 공유해야 한다.

지역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중장기적 계획이므로 보통 3-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데, 계획기간을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맞추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이 경우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임기 동안 책임 있게 계획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과 아울러,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지역인권정책의 지속성과 연결성이 사라진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

5. 지방정부 인권 시책 및 거버넌스 성공의 조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 시책과 인권 거버넌스가 어느정도 성공한 모습을 보이는 지역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 그래서 자치단체 내부에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했으며, 역량 있는 지역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의 독립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인권 시책들을 기획하고 시행하고 있다. 비록 일반 주민들의 관심은 전반적으로 미약하지만 인권활동가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여 협력함과 동시에 비판적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 실정은 시민사회의 힘이 약하고 자치단체의 힘이 강하며, 자치단체 내부에서는 자치단체장이 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특히 인권 시책을 막 시작하면서 관련 조직을 새로 만드는 단계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공무원들의 경우 안 해보던 일을 새로 시작하는데 있어서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장 한 개인에 의존하는 인권 시책은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장기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그래서 자치단체 내부에 인권전담 조직을 만들고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담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의 원리에 따라 어느 정도 지속성이 생길 수 있다. 전담 직원은 내부에서 순환보직 형태로 운영하기보다는,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관심, 특히 인권취약집단의 조직화된 요구와 이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 그리고 지역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 향상이다. 하지만 인권취약집단의 경우 대부분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초기 단계에는 인권취약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민간 차원에서 이끌고 갈 민간 핵심주체들이 필요하다. 초기 단계에는 어쩔 수 없이 소수의 사람들이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겠지만, 인권이 지역 단위에서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인권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인권을 위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핵심주체들이 폭넓게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민간 핵심주체와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차원의 민관 인권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때 독립성과 활동력을 갖춘 지역인권위원회가 인권 거버넌스

의 중추가 되어야 한다. 인권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권 시책과 인권 활동이 기획되고 적절한 예산이 배정되어 시행된다면 기초적 조건이 갖추어 진 것이다. 그리고 시행된 인권 시책과 활동을 통하여 실제 주민들의 인권이 증진되고 또 주민들이 이에 호응하고 공감한다면 지역에서 인권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은 물론 자라나는 학생, 각종 사회단체 및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하다.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지역 주민의 민주적 대표성과 예산 및 조례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 의회, 그리고 지역언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협력과 동시에 애정 어린 비판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 있는 대학이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 단위 인권 연구나 인권실태 조사 등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중앙집권적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 인권 시책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분권화의 미비로 인해 완전한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못했다. 특히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인권 보장에 중요한 치안 업무와 노동 관련 업무가 지방정부 소관이 아니어서 이와 관련하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 제약된다. 더구나 지방정부 소관인 업무들도 중앙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심하고 또 예산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관심이 없거나 꺼려하는 일을 지방정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일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인권 옹호 활동을 최소한 제약하지는 말아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시행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주민들에게 참정권을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그 자체가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지원도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인권교육이나 인권상담과 관련된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아직까지 인권행정에 서둘 수 밖에 없는 자치단체의 인권행정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예컨대 교육 프로그램 시행이나, 업무 매뉴얼, 모범 사례집 발간 등을 수행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다른 지역 및 국제기구들과 인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대와 협력, 상호 학습을 도모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유럽의 대표적인 인권도시 바르셀로나의 경우 도시 차원, 바르셀로나가 속한 카탈로니아 지역 차원, 스페인 정부 차원, 유럽연합 차원, 그리고 유엔 차원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정부 수준에서 각각 어떠한 역할을 통해 시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 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외 협력 네트워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지하는데도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핵심 네트워커(networker)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방정부 인권 시책 및 거버넌스 성공의 조건을 열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표 1> 지방정부 인권 시책 및 거버넌스 성공 조건 10가지

1. 지역주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요구와 관심, 특히 인권취약집단의 조직된 요구
2. 핵심 주민 주체의 형성과 지역 차원의 인권 거버넌스 구축
3.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인권 옹호 의지와 리더쉽
4.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적절한 권한을 가진 인권전담부서 및 전담 직원 배치
5. 지역 인권위원회의 적절한 구성과 독립적 활동 지원
6. 지역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인권 시책 기획 및 집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 배정
7. 공무원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인권교육 실시
8. 지방의회 및 지역언론, 시민사회단체, 인권운동가들의 관심과 협력, 건전한 비판
9. 중앙정부의 지원,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의 지원
10. 국내외 지역 및 국제기구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와 상호 학습

6. 현안과 당면 과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시작된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 시책 및 거버넌스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현안들이 나타나고 있다. 인권을 옹호하려는 지역 사회의 의지가 있고 위에서 언급한 성공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해야 지역에서 인권 증진이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지역 단위의 인권 증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민관 인권 거버넌스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 차원의 인권 거버넌스는 자치 단체의 인권전담부서, 민간인권위원회, 인권 옴부즈만, 인권단체 및 인권취약집단을 대변하는 당사자 단체, 인권 전문가 및 인권에 관심있는 시민들로 구성된다. 그런데 민관 거버넌스에 다양한 여러 주체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들 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공통의 목표와 시행 과정에 대한 협력을 이끄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자치단체 내부의 인권전담부서가 민간 인권위원회와 관계가 매끄럽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인권전담부서가 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력만으로 인권 시책을 밀어붙일 수도 있으며, 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들이 지나친 이상만을 내세워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인권전담부서에 실행 불가능한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또 자치단체 내부에서 인권위원회나 인권 옴부즈만의 위상이 불안하여 독립성을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인권전담부서, 인권위원회, 인권 옴부즈만 등 인권 거버넌스의 주요 구성 조직들은 그동안 자치단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조직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조직의 위상과 권한, 이를 상호간의 관계 설정 과정에서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이 과정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여 제대로 작동하는 인권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면 공무원, 인권활동가, 인권당사자단체 등 거버넌스 참여자 모두의 상호 이해와 공감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소수의 전문가나 활동가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을 인권 거버넌스의 틀 속에서 참여시키는 것이 인권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자치단체 조직 내부에서도 인권 전담부서와 다른 인권 관련 업무 부서와의 합리적인 기능 분담 및 원활한 업무 관계 조율이 필요하다. 자치단체 모든 부서가 인권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을 정도로 인권 업무는 매우 포괄적 업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부서가 모든 인권 업무를 혼자 다 할 수 없으며 다른 부서와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인권 전담부서와 다른 관련 부서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직접적 인권 정책과 인권 관련 정책 사이에도, 그리고 위에서 말한 인권 거버넌스와 다른 인권 관련 거버넌스 사이에도, 그리고 인권기본조례와 다른 인권 관련 조례 사이에도 합리적 기능 분담 및 원활한 조율이 필요하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인권전담부서에서 관할하는 인권기본조례 외에 아동청소년부서에서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장애인 부서에서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등 인권과 관련된 다른 조례들이 있고, 이 각각의 조례들마다 각 근거법, 관련 국제 인권 규약, 담당 전담부서, 관련 단체, 거버넌스 기구인 위원회 등이 연결되어 있다. 인권 전담부서와 인권위원회, 인권기본조례의 역할은 따라서 각 부문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의 업무 영역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인권 관련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 각 부문별 인권 관련 사업이나 정책을 인권 관점에서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이것이 더 잘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업무들을 원활히 조율하여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역할, 담당 부서나 관련 조례, 관련 거버넌스 조직이 없는 인권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지금까지 중앙정부 기구들이 독점하던 인권 업무를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게 되면서, 국가의 인권 업무와 자치단체의 인권 업무 간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인권 전담부서이고, 나머지 부서들이 각 부문별로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중앙정부가 보기에 자치단체의 인권 업무 추진이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일 수도 있다. 특히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과 구제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자치단체 인권위원회의 해석 및 대응이 다르다면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

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자치구 행정과 갈등을 유발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지는 국가 행정체계 속에서 각 조직의 인권증진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면서 서로 인권 옹호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 과제가 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주민들과 더 가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권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를 고민해야 한다.

넷째, 지방행정 내부에서 인권 영역의 명확한 구분이나, 인권의 원칙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당분간 행정 일선에서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 우선 주민들의 인권 민원접수 및 상담과정에서 인권 민원과 일반 민원과의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 이미 존재하는 일반 민원 및 고충처리 부서의 업무와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인권과 이권, 인권과 이기주의적 민원이 쉽게 구별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경계가 애매하고 모호한 경우도 많다. 가령 장애인 인권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건축을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과 환경권을 주장하면서 반대할 수도 있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의 침해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 사이의 경계 구분도 쉽지 않다. 특히 인권의 구성 요소들끼리 충돌하는 사안의 경우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렵게 된다. 예컨대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서 토지수요자는 재산권을 주장하고, 세입자는 주거권을 주장하면서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권과 주거권 둘 다 인권의 목록에 들어있는 주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인권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안전권과 사생활 보호의 권리가 충돌하는 것이다. 인권 사안과 일반 민원 사안의 구분, 인권 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인권의 영역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다섯째,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 순위 설정 문제이다. 예산과 인력이 넉넉하다면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겠지만 항상 자원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권 업무에서도 우선순위 설정이 쉬운 일이 아니다. 예컨대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여러 인권취약계층과 그들을 대변하는 당사자단체들이 서로 자신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할 때,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현안이 된다. 이러한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민관 인권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사전에 지역의 중장기 인권 시책의 방향 및 예산 조달 방안을 계획하는 지역 단위 인권기본계획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수립 과정이 중요해진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정부 단위의 인권 행정, 인권 시책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 조례에 근거하여 인권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다양한 인권 시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권 증진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또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현안 과제들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인권 증진은 결코 하루 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인권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도 중요하지만, 이 시책의 추진 방식이 인권적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와 과제

- 인권행정의 제도화 및 이행과정에서의 고려사항 -

이발래(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

I. 지역사회 인권제도와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1. 지역사회 인권보장체계 구축의 필요성

-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차원의 인권보장 체계 마련 필요
 - 특히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과 그 실행 체계 구축이 요구됨.
- 헌법에 따른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보장할 지방정부의 의무
 -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직접 규정

2. 인권기본조례 제정의 의미

- 지역사회 인권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의 필요성
 -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규범력을 가지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지역화를 위한 이행 도구로 기능
- 인권기본조례는 특정 집단이나 사안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장·증진하기 위한 실행체계를 마련하는 것
 -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에 기반한 계획수립과 정책실행, 조직 구성 등과 같이 개별적 인권조례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을 다룰 수 있음.

3.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가. 권고의 내용

- 2012. 4.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여 인권기본조례를 제·개정할 것 등을 권고
 - 인권기본조례 표준안 및 해설서 제시
 - 인권기본조례가 담아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 그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기준 등을 제시하기 위해 각 조문의 취지에 부합하는 표준 조문을 제시(표준안은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 표준안 각 조문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해설서 제시

나. 권고 후속 주요조치

- 지자체 및 지방의회 관계자 협의 및 권고이행 모니터링(수시)
-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화 설명회(2012. 6~7.): 8개 권역별로 실시
-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워크숍(2013.4.1.~4.2.):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의 실효적 이행방안 모색 워크숍(2013.6.)

II.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1. 인권기본조례 제정 현황

- 2013. 8. 기준, 인권기본조례는 아래의 표와 같이 51개 기관(11개 광역자치단체, 4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에서 인권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광역자치단체 11개 기관에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2년에 고성군, 고흥군,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서구, 목포시, 문경시,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완도군, 울산광역시 동구, 울산광역시 북구, 진주시, 함양군, 화성시에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2013년

에 고령군, 고양시, 광명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동구, 김포시, 대구 광역시 달서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서구, 보성군,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부산광역시 중구, 부여군, 서산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남시, 수원시,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중구, 원주시, 의정부시, 천안시에서 각각 인권기본조례를 제정되어 기초자치단체 40개 기관에서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검색(2013. 8. 31. 기준)

2. 인권기본조례에 따른 후속조치 진행

-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인권전담부서나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후속조치 진행중
- 동시에 지방정부의 인식이 미흡하거나 인권제도 이행 노력이 소극적인 곳들이 있는 한편, 인권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그 이행방향을 정립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정책 도출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 공존
 - 다만, 인권기본조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인권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제기되었는데,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어느정도 정리가 이루어진 상황

III. 인권기본조례의 주요내용 및 과제

1.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가. 인권위에서 제시한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의 내용(안 제4조)

- 지자체장의 책무의 내용으로 주민의 인권보장·증진 관련정책 발굴 및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 인권침해 발생시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시

나. 사례

- 인권침해 발생시 자치단체장의 조치와 관련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지자체장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는 시민인권보호관제도(2012.11.), 광주시는 인권옴부즈맨제도(2013.4.)를 도입하기도 함.

2.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수립

가. 표준안의 내용(안 제6조)

-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로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을 명시
- 인권 기본조례의 성격상 구체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의 시행은 기본계획 하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
- 기본계획에는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사업추진 채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
- 실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주민의 협력을 위한 공청회 실시. 기본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나. 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현재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광명시, 울산 동구청, 부산 해운대구 등에서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할 필요
 - 국가 단위가 아닌 자치단체 단위의 과제 및 사업의 개발: 인권상황 진단에 따른 과제를 도출하여 국가단위/지방정부 단위/민간부문 자체 해결 사안으

로 이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로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

- 지역의 특수성 고려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계획과 사업을 연계
-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시민인식조사, 기본계획 공청회 등

3. 인권교육 실시

가. 표준안의 내용(안 제7조)

-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인권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므로 인권교육 실시에 관하여 규정
- 인권교육의무 대상자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으로 한정할 수 있지만(정기적·의무적 실시) 그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그 외 인권교육 체계의 마련과 인권위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지자체의 인권교육 및 인권위의 협력·지원

-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된 대부분의 지자체는 단체장이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고, 그 대상으로 소속공무원 및 직원뿐만 아니라, 단체장이 지도 감독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종사자, 출연과 재정보조를 받은 복지시설 종사자, 공공기관 구성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인권위는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훈련, 인권감수성 향상 연수과정,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 등의 인권교육 과정과 사안별 협의체(학교인권교육협의회, 노인 인권교육협의회 등)를 운영하고 있어 인권교육에 있어 인권위의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
 - 또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표준강의안과 함께 인권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인권영화, 인권UCC나 사진, 포스터 등을 구축하고 있어 이러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

4. 인권보장 · 증진위원회 설치

가. 표준안의 내용(안 제11조~제15조)

-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인권증진위원회는 인권기본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연○’화‘와 같이 정기회를 두는 것이 적절

나. 인권증진위원회 현황

-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의 대부분이 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여전히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구성했더라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곳들도 있음.
- 지자체 인권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인권증진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와 평가 등 인권기본조례의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므로 조례 제정 후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구체적인 정책 수립 · 실행 과정에서도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

5. 인권영향평가

가. 표준안(안 제14조)

-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 · 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인권증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한편,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영향의 정도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러한 규정은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것으로, 해당 조례나 정책의 실시 과정 및 효과 등에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여 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 HRIA)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기업 등 조직 포함)가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조직체 포함)의 법령과 정책 및 사업 등의 계획과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전 또는 사후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음.

나. 사례

- 인권조례에서 인권영향평가 규정이 있는 경우는 광주시와 서울 성북구의 인권조례인데, 서울시 성북구청의 경우 투표소, 산책로, 세출예산, 주민센터, 조례 · 규칙,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인권영향평가 실시의 모범사례로 거론되고 있음.
-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있어서 평가의 기준이나 제도 설계 등에 있어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인권영향평가의 범주는 매우 다양하므로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라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 가령, 성북구청에서 실시했던 투표소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나 지방정부의 조례 · 규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6. 인권조례 이행을 위한 조직

가. 표준안(안 제8조)

- 지자체장이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
- 인권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권전담 부서 설치를 비롯한 인력확충 등의 조치가 필수적임. 인권전담 부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도 중요

나. 사례

- 광주시 인권담당관실(2010.8), 서울시 인권담당관실(2012.9.)와 같이 지자체

내에 전담부서가 설치된 경우, 경기도 광명시 시민인권센터(2012.4.)와 같이 별도의 센터를 구성한 사례가 있고, 서울 성북구나 서대문구와 같이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팀으로 하는 경우나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식 등이 있음.

- 인권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실행조직이 필수적이고 그 형태는 인권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각 지자체의 사정과 역량에 따라 전담부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비록 소규모라도 실행을 위한 조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7. 인권보장 · 증진정책의 예시

가. 기업인권

- 오늘날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 경영상 인권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방지방자치단체가 인권행정을 실천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기업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그러한 방향선회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협의하는 것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물자를 조달하여 운영하고 그 조달규모도 큰데, 이러한 막강한 구매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인권경영을 유도하는 방안이 있음. 즉, 공공기관이 기업의 인권경영 지수를 공공조달에 반영하는 정책수단을 사용
 - 공공기관이 다른 업체와의 거래 시 재무건정성, 기업신용도 등을 고려하는 것 외에 인권 보장 활동에 부정적인 업체를 배제
 - 대형공사 입찰참가사전심사기준에 산재율을 포함하여 인권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공사 계약 시 사회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 등

나. 노동인권

- 노동인권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할 사안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검토해볼 수 있음.
- 가령,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을 활용하여 건물청소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거나 청사관리업무의 위탁·외주계약을 점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서울시 노원구청과 성북구청은 2013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는데,¹⁾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의 일환

다. 다문화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최근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결혼이주자의 경우 가정 내 인권문제나 자녀교육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지역사회 내 적용 및 차별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곳이 상당수 되지만 일회용 이벤트 중심의 사업을 주로 시행하는 등 미흡한 부분들이 제기되는 상황
- 인권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사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거나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IV. 인권행정의 제도화 및 이행 과정에서 고려사항

- 현재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51개 기관으로, 2012. 4. 인권위 권고시의 10개 기관과 비교할 때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인권제도의 구축과 그 이행에 대한 고민이 보다 깊어지고 구체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

1) 생활임금(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적정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체계)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8% 수준으로 보고, 2013년부터 구청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 중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이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것임. 이러한 조치 이전에 이들 자치단체는 청소용역회사에 소속돼 있던 근로자들을 2011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직접 고용하여 용역회사에서 갖던 수수료를 근로자에게 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임금 인상 효과를 가져온바 있음. 또한 향후 생활임금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2013년에 생활임금 확대 적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민간위탁, 조달계약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조례제정 및 관련규정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함.

1.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사항

- 가.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준수
- 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조직과 예산 확보
- 다. 인권상황의 측정도구
- 라. 공무원의 인권교육과 지원
- 마. 기존조례의 개정 등 관련 조치 필요
- 바. 인권조례제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2. 이행과정에서 고려사항

가. 인권증진기본계획의 고려사항

- 1) 목표의 적합성과 실행가능성(지역의 특수성 고려)2
- 2) 자치단체 단위의 과제 및 사업개발
- 3)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 4) 관련 계획 연계 및 지역 잠재력 반영
- 5) 추진 관계자의 인권의식 강화
- 6)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주체간 소통과 실효성(실행력) 확보

나.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시 고려사항

- 1) 인권지수의 개발 및 활용
- 2) 인권영향평가의 의무화
- 3) 기준 심사·평가제도 확인 및 활용
- 4) 인권영향평가제도 설계시 충분한 의견수렴
- 5) 인권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명확화
- 6)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의 인권교육 강화

인권도시 서울의 약속,
서울인권정책 제1차 기본계획

서울시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장 정정길

○ 서울시 인권정책 추진경과

서울시민 권리 선언
(11.1.10.19)

- 서울시 행정의 목적이 시민의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 실현에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선언
- 전문 : 차별금지와 평등, 문화적 다양성 존중
- 10조 : 정보, 참여권, 표현의 자유, 도시서비스, 안전권, 이동권, 환경권, 일할 권리, 교육 문화 건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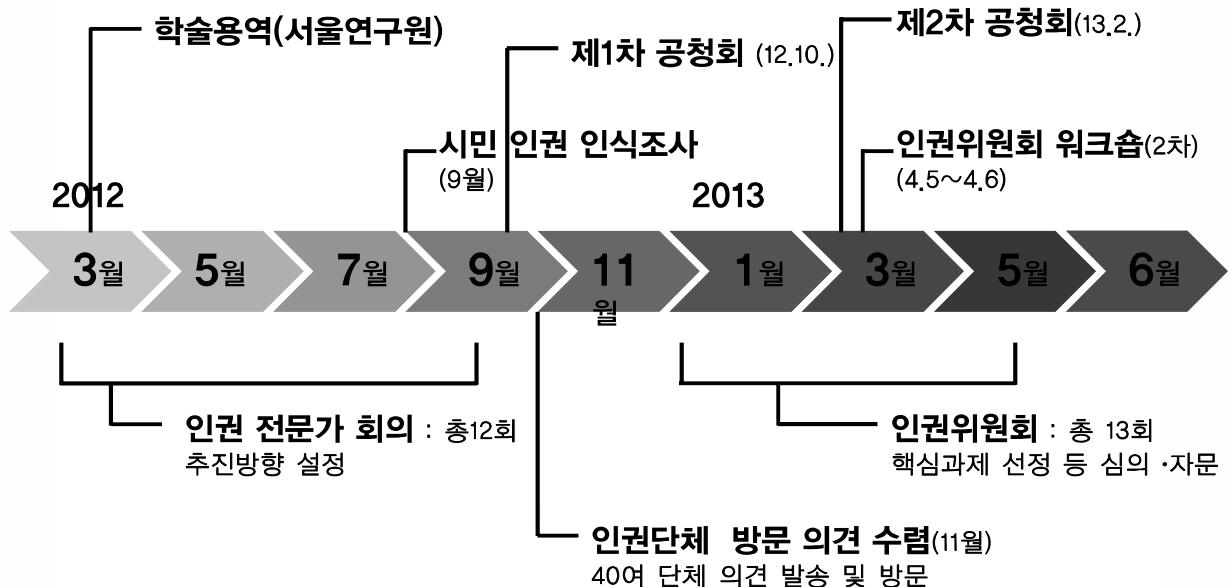
인권 가치 제도화

- 인권기본조례 제정 (12.9.28)
-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12.11.27)
- 인권전담부서 신설(12.9.28)
- 시민인권보호관 도입 (13.1.2)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 근거 : 인권기본조례 제7조, 제8조
 - 정책과제, 추진목표, 실행계획, 소요재원
 -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5개년 중기 계획(13년~17년)

○ 수립과정



○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역할

희망 서울
당기 헌드는 서울, 당기 누리는 서울

- 2012.11.27 구성 후, 총 13회 공식 회의 (워크숍 2회) 개최
- 과정 ① 수립방향 및 체계 논의
- ② 중점과제 논의 등 사업개발 및 보완
- ③ 대표사업 선정 및 네이밍



수립원칙과 중점과제 논의



세부사업 검토



대표사업 선정 및 네이밍

- 위촉식(12.11.27), 임시회(12.11)
- 예비회의(1.2), 워크숍 (1.4)
- 사회적 약자 소회의(1.21)
- 임시회(1.24)

- 13년도 제1차 정기회(2.28)
- 이주민 분야 부서장 회의(3.6)
- 노동분야 부서장 회의(3.12)
- 장애분야 부서장 회의(3.14)

- 인권위원회 임시회 개최(3.28)
- 부서장 회의 등 의견수렴결과 검토
- 인권위원회 워크숍(4.5~4.6)
- 13개 대표사업 선정 및 네이밍 논의

○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성격

기본계획의 특징

- 전 시정에 최초로 인권관점을 도입한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
- 과제별 목표, 예산 및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실행력 확보
-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중점 추진
-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통한 계획 수립

타 기본계획과의 관계

- 인권관점 정책 방향 수립 : 장애인 탈시설정책으로 전환, 이주민 인권관점 정책추진, 인권고려 계약제도 추진
- 기존사업을 인권적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조화
- 기존의 문제있는 행정관행 개선 : 행정대집행시 강제퇴거 개선
- 의미 있는 기존사업 확대 발전 : 저상버스(2018대→3685대), 교통약자형 버스단말기도입, 쪽방촌주거환경 개선(영등포→동자동, 홍릉동 등)

○ 기본계획 체계

정책비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정책목표

5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문화확산

인권제도
기반 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중점과제

25

- | | | | | |
|---|--|---|--|----------------------------|
| • 장애인
• 여성
• 어르신
• 노동
• 어린이
• 이주민
• 피해자 | • 장벽없는 도시
• 안전보장 도시
• 주거권보장도시
• 인권기역 도시 | • 인권행정 환경개선
• 인권감수성 향상
• 인권문화 조성
• 인권기역 도시 | • 인권행정
• 인권제도
• 인권문화 조성
• 인권기역 도시 | • 시민참여
• 인권도시
• 네트워크 |
|---|--|---|--|----------------------------|

추진과제

73



인권정책 기본계획 주요 대표사업

I . 인권약자 인권증진

1. 탈시설 장애인 정책으로의 전환
2. 돌봄 서비스 여성종사자 권리 확대
3. 취약 노동자 인권 실질적 증진
4. 고령화시대 적극 대응하는 어르신 인권 증진
5. 인권관점의 이주민 정책 추진
6. 인권피해자 등 치유 지원

탈시설 장애인 정책으로 전환

5년내 시설 장애인 20% 탈시설 프로그램 가능



보호시설 중심의 장애인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삶의 권리 보장

현황 및 문제점

- 규율, 통제 중심으로 인권 보장 한계
- 지역사회와 분리된 시설중심의 생활

세부 추진 계획

- 체험홈, 자립생활 가정 등 주거지원 확대
- 직업재활시설 등 자립기반을 위한 일자리 개발
- 시설이용자 자립준비 위한 동료상담 등 정보제공

돌봄서비스 여성종사자 권리 확대



인권사각지대에 있었던 돌봄 여성노동자들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 및 여건 개선

※ 돌봄노동자 : 노인요양서비스, 간호서비스, 아동방문보육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후조리, 가사 서비스 종사자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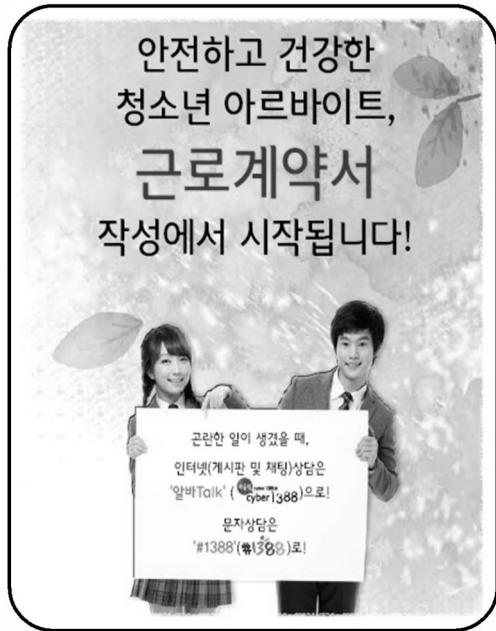
- 최저임금 수준 미달 등 열악한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미적용 등 공적 제도 적용 제외
- 팔, 허리통증, 우울증 등 각종 질병 보유

세부 추진 계획

- 실태조사를 통한 종합대책 수립
- 돌봄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 공모사업 통해 <가사노동자 건강 사업> 추진 등

취약 노동자 인권 실질적 증진

※ 취약노동자 : 노조미가입자, 비정규직, 최저임금 미만, 4대보험 미적용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가장 어려운 노동조건에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131만명
- 임금총액 정규직의 59%, 최저임금 미만계층 지속 증가
- 영세사업장 보험가입률 60~80%
-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등 발생

· 세부 추진 계획

-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 노동기본계획 수립으로 노동인식 개선 등 정책 추진
- 청소년 근로보호 가이드라인 등 조치
-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15년까지 6,231명)

고령화 시대 적극 대응하는 어르신 인권 증진



고령화가 가속되어 어르신 인구 급증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
따라서 이를 적극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령화 가속
- 서울인구의 10% 어르신(11년)
- 고학력, 전문직 신노년층의 사회참여 욕구 증가
- 신 노년층 대상 복지시설, 정책 부족

· 세부 추진 계획

- 일자리 : <인생이모작지원센터> 1구 1센터 설립
- 문화 : <어르신영화제> 등 문화콘텐츠 확대
- 건강 : <어르신 돌봄 통합전산시스템>, 재가간병 지원

인권관점의 이주민정책 추진



한 도시의 인권수준은 이주민인권과 비례,
그 동안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이주민을
시 인권정책 영역으로 적극 포함하여 인권증진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거주자 4%가 이주민, 향후 증가 전망
- 정책결정과정에 이주노동자 참여 배제
- 가정, 사업장 내 폭력 등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

• 세부 추진 계획

- 이주민의 목소리 반영하는 정책체계 추진
 - 이주민 인권전담 창구 신설 및 대표자회의 운영
- 이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센터> 건립 추진
- 보건소 등 의료접근권 확대 추진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



인권피해자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본격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후유증
 - 76.5% 외상후 스트레스, 24.4% 자살시도
- 후유증이 가족, 사회, 세대에 전달

• 세부 추진 계획

-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및 정책 개발
- 집단 상담 등 심리치유 프로그램 추진
- 의료인 대상 피해자 트라우마 교육자료 개발·보급
 - 정신 신체적 후유증에 대한 의료진 이해 증진

II.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1. 주거권의 실질적 보장
2.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증진
3. 시민의 평생학습권 신장
4. 인권을 기억하고 배우는 도시 조성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주거권의 실질적 보장



철거민, 쪽방촌 주민, 노숙인, 주거기준선 이하 주민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현황 및 문제점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1.9% (41만 가구, 2010)
- 밀집거주로 주거 안정성 및 질 저하
- 공동부엌, 화장실 등 위생설비 개선 필요

세부 추진 계획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바우처 확대
- 쪽방 밀집지역 환경개선 사업 추진
- 강제퇴거 개선
 - 재개발 사업은 <사전협의체 구성>으로 사전 논의
 - 행정대집행은 <인권 매뉴얼>을 제작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증진



장애인, 노인, 아동, 영유아 등 **교통약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보장

① 현황 및 문제점

- 저상버스, 장애인 이용 곤란 상황 빈발
 - 기사와 소통 방법 부족 등
- 장애인콜택시 취약시간대 평균 대기시간 : 62분

② 세부 추진 계획

- 저상버스와 이용자간 의사소통 수단 확보
 - 탑승예약 앱 및 교통약자형 단말기 보급
- 취약시간대 콜택시 평균 대기시간 목표 : 62분→38분
- 지하철 「1역사 1동선」추진
- 사람우선의 보행권 개선

시민 평생학습권 신장



사회변화, 기술발달로 더욱 중요해진 **평생학습**,
누구나, 언제든지, 부담없이 배울 수 있도록
서울시가 시민의 권리 적극 신장

① 현황 및 문제점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요구증가
 - 기대수명 증가 : 79.6세('10년)→81.5세('20년)
- 제2의 인생설계 등 평생학습 참여율 증가
 - 26.4%('08년) → 35.6%('12년)

② 세부 추진 계획

- 프로그램 및 접근방법 다양화
 - 평생학습포털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확대
 - 소외계층의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인문학 중심의 시민대학 확대
- 노동인권교육 및 시민인권아카데미 추진

인권을 기억하고 배우는 도시 조성



생활속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곳곳을 살아있는 인권의 배움터로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 인권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장소들 기념 필요
- 예) 남산 안기부터, 서대문 형무소 등
- 인권을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부족

· 세부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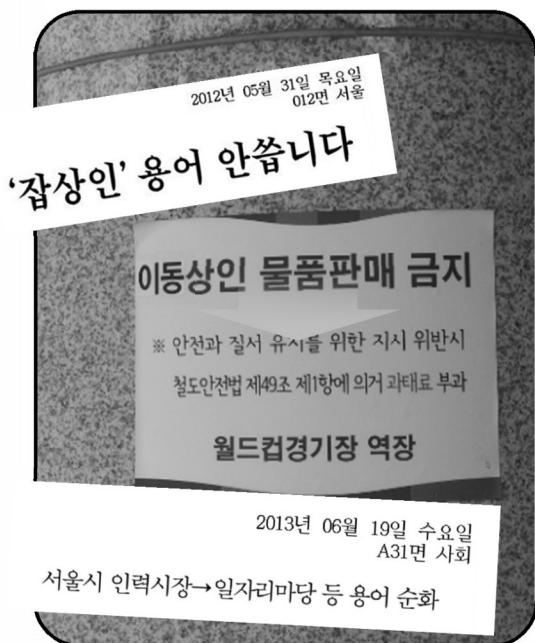
- 인권기행 추진
- 남산 안기부터, 서대문 형무소 등 탐방코스 조성
- 시립 도서관에 인권자료실 설치
- 인권공공디자인 설치
(예 : 세계인권선언문 도로경계석 조각 등)

III. 인권도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

1. 인권친화적 언어사용, 각종 차별시정 적극 추진
2. 공무원 인권교육 전면 실시
3.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정착

인권도시 제도적 기반

인권친화적 언어사용, 차별시정 등 적극 추진



시민 삶과 밀접한 영역부터

인권 존중 실현

-○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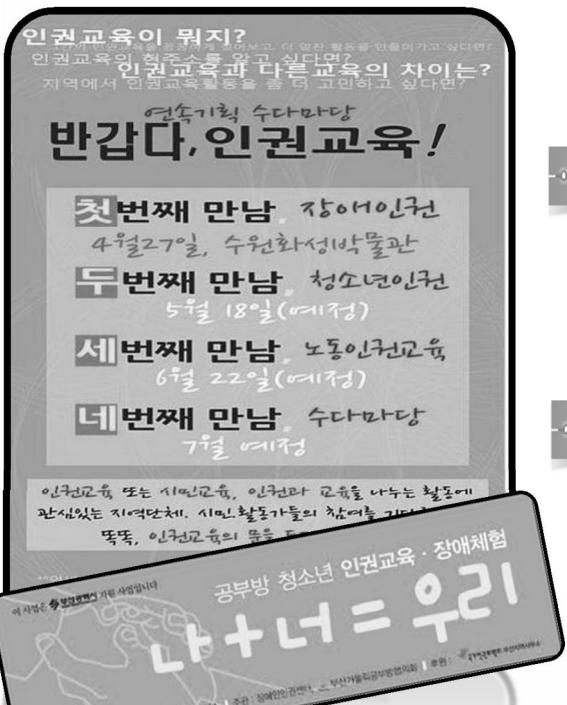
- 시민의 인권을 고려해야 할 현실적 사항 증가
- 예) 인권침해적 공공언어 사용, 행정대집행
- 계약 등 인권가치 적용이 필요한 행정영역 증가

-○ 세부 추진 계획

- 인권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행정 영역에 대한 인권매뉴얼화 추진
- 인권비하적 용어개선 및 순화용어 사용
- 인권을 고려한 계약제도 운영

인권도시 제도적 기반

공무원 인권교육 전면 실시



공무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여,

인권도시 실현 원동력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공무원 인권교육 경험 전무
- 공무원 인권감수성 부족
- 예) 환경미화원 비인격적 처벌(모 구청 사례)

-○ 세부 추진 계획

- 연 4회 「인권교육 의무이수제」 실시
- 사업소, 투자출연, 복지시설까지 인권교육 확대
- 인권관련 부서 ⇒ 체험식·토론식 교육 강화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정착

2013년 01월 01일 화요일
022면 피플

시민인권보호관 3명 임명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청 6층 집무실에서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채용된 이윤상·염규홍·노승현 씨 등 3명에게 인사발령장을 수여했다.

인사발령장을 수여했다

지자체 최초로 운영되는 인권옴부즈퍼슨

활성화로 시민인권침해 적극 예방

현황 및 문제점

- 조사건수가 증가, 예산 및 현장조사 인력 부족
 - 43건(1~3월) ⇒ 61건(4~6월)
-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시민참여 보장

세부 추진 계획

- 업무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
 - 전임계약직 전환 등 정원 확보 추진
- 시민참여배심제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인권정책 기본계획 실효성 확보 방안

1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조례8조)

- 2014 소요예산 편성 (9월중)
- 중기재정계획 반영
- 연도별 시행계획 인권위 보고

2

인권보고서 발간

- 2년 주기 인권보고서 발간
- 인권정책 추진 및 개선사항

3

기본계획 추진사항 평가

- 5년 주기 기본계획 실행여부 평가
- 필요시 평가담당관 평가 의뢰
- 미흡사업 인권위 개선 권고 등

서울이 그리는 인권도시 서울은…



감사합니다.

[道 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과제 발굴]

인권증진위원회 워크숍 [2013. 9. 10]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 01_ 인권의식 조사의 개요
- 02_ 충청남도의 인권의식평가
- 03_ 인권침해와 차별
- 04_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인식
- 05_ 인권교육 및 행정
- 06_ 인권의식 실태조사 내용과 시사점

01

인권의식 조사의 개요

01. 인권의식 조사의 개요

01_1 조사의 배경

◦ 인권의 개념

- 인권은 모든 인간이 본질적이고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모든 권리
-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 조례'에서 규정하고 보장하고자 하는 도민의 권리

◦ 인권 관련 국내외 법령 및 정책 현황

- UN 세계 인권 선언(1948)
- 대한민국 헌법(1987)
- 제2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2)

◦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현황

-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09, 2012)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2012)
- 충청남도 도민인권증진에 관한 조례(2012. 5)

01. 인권의식 조사의 개요

01_2 조사의 목적

- ‘충청남도 도민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 ▶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명시
 -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도민의 인권 의식을 파악할 필요성 제기
- 충남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 ▶ 도민의 인권의식 실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 마련
 - ▶ 도민의 인권욕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파악

충청남도
인권의식
실태조사

목적

충남도민의 인권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

충남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
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5]

01. 인권의식 조사의 개요

01_3 조사 방법

- 조사대상
 - ▶ 만 19세 이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 유효표본
 - ▶ 총 1328명
- 조사방법
 -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 면접조사
- 조사기간
 - ▶ 2013년 5월 22일 ~ 2013년 6월 18일
- 표본추출 방법
 - ▶ 충청남도 15개 시군별 성, 연령, 인구 비례 표본 할당 후 무작위 층화표본 추출
- 분석방법
 - ▶ 수집된 설문지는 코딩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SPSS)를 이용해서 분석
 - ▶ 빈도분석, 교차분석, 평균값 등의 통계분석 실시

[6]



01. 인권의식 조사의 개요

01_4 조사내용

- **충남의 전반적 인권 의식 및 평가**
 - 전국/충남도의 인권의식 비교
- **충남도의 인권 침해와 차별**
 - 인권 침해의 심각성 및 각 계층의 인권존중 정도
-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상황(노인,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 일상생활, 경제활동, 사회복지, 교육, 사회참여 영역에서 인권 상황
- **충남의 인권 교육 및 행정**
 - 인권 교육의 경험 및 필요성, 교육프로그램 등
 - 충남도 행정의 인권보장 정도 및 교류 필요 기관
- **인권 현안과 정책**
 - 자유권적/사회권적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
 - 향후 조사 시 비교 자료로 활용

[7]

02

충청남도의 인권의식 평가



02. 충청남도의 인권의식 평가

02_1 충청남도 인권의식 평가의 시사점

◦ 인권 상황에 대한 낮은 평가: 인권상황에 개선 필요성 인식

- 충남도민은 전국 및 충남의 인권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림
 - 충남도민은 충남의 인권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인식
 - 그러나 충남의 인권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될 것으로 인식
 - 제도적 차원의 인권증진 노력이 미약
 - 충남도민은 인권정책 중 필요한 것은 인권약자의 보호, 건강한 삶, 안전한 삶의 보장으로 꼽고 있음
- 특히 충남에서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은 점으로 미루어 지역차원의 인권제도의 정비를 통해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약자의 인권증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9]

03

인권 침해와 차별

03. 인권 침해와 차별

03_1 충청남도 인권침해와 차별 조사의 시사점

◦ 인권 약자의 인권존중 미흡과 사회권적 인권에 대한 높은 관심

- ▶ 충남도민은 장애인, 다문화 여성,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인권약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
- ▶ 자유권적 인권 보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반면 개인정보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 우세. 새롭게 등장한 인권문제에 대응 필요성 대두
- ▶ 확장된 개념의 사회권적 인권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 충남의 인권정책의 방향은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계층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에 더해 전반적인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
- 인권 개념은 최소주의적 관점으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의 권리에 대한 보장을 지향하는 최대주의적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고, 충남도 이러한 상황에 맞게 보다 적극적인 대응(Affirmative Action)이 필요함

[11]

03. 인권 침해와 차별

03_2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한 대응

◦ 인권침해와 차별의 대응: 현실적 침묵과 적극 대응 의지

- ▶ 충남도민은 충남도민은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했을 때 과반 이상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소극적 태도
- ▶ 무대응 이외의 대응양상은 직접적 해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 앞으로 일어날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서는 당사자와의 직접해결, 행정기관의 진정 등 다양한 방식의 대응을 하겠다고 응답
- ▶ 대응양상은 피해자가 직접 대응하는 양상이 우세
- 인권침해나 차별발생 시 충남도민들이 그것에 대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즉 상담, 중재, 구제 방법을 교육하는 기관이 부족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 따라서 사소한 침해의 중재부터 피해의 상담, 구제, 보상까지 포괄하는 중간 기구의 운영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요구됨

[12]

04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인식

04.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인식

04_1 노인의 인권 상황

◦ 충남 노인의 인권상황 인식: 빈곤과 사회관계의 단절

- 충남도민은 노인들에 대해 일상생활, 경제적 문제, 사회복지 영역, 교육과 사회참여 부문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들은 스스로를 경제적 어려움, 구직활동의 어려움, 일상의 고독, 여가활동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응답
- 조사결과로 추론하면 충남 노인의 상황은 구직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이는 다시 여가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겪는 악순환 과정에 놓임
-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장기적으로 선순환의 과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

04.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인식

04_2 청소년의 인권 상황

◦ 충남 청소년의 인권상황: 타율적 강압과 지역적 불평등

- ▶ 충남도민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학교,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여가와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부당한 임금 등을 강요당한다고 인식
- ▶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서 수업시간 이외의 보충·야간학습을 강요 받으며, 학교운영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고 인식됨
- ▶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폭력과 학습강요, 부당한 임금 등 청소년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는 것은 열악한 농어촌지역에서 더욱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학교内外에서 청소년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취약지역인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

[15]

04.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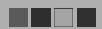
04_3 장애인 인권 상황

◦ 충남 장애인의 인권상황: 총체적 인권 소외

- ▶ 충남도민은 장애인들이 이동편의 시설 부족 등으로 일상생활어려움을 겪고, 취업도 어렵고, 취업을 할 경우에도 임금차별 등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
- ▶ 또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기관 운영 시 장애인의견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시설운영의 형태를 띠고 있음
- ▶ 교육편의시설 부족,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등 투표의 어려움 등 도민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충남 장애인들은 총체적인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됨.
- 따라서 기존의 장애인 정책을 인권의 관점으로 재검토하고,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이 필요

[16]

04.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인식



04_4 충남의 이주민

○ 충남의 이주민: 편견과 문화적응의 어려움

- ▶ 충남의 이주민, 즉 다문화 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적과 외모로 인해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고, 직장 내에서 차별에 시달리며, 한국에 대한 이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우리 사회적응이 힘들어 한국문화의 적응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식됨.
- ▶ 또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서 소외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됨.
- 따라서 충남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7]

04. 인권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인식



04_5 충남 인권취약계층 분석의 의미

- 충남도민은 인권취약계층에 대해 일상, 경제, 복지, 교육, 사회참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인식함
- 그러나 본 충남도민 인권의식조사는 인권취약계층 당사자와, 활동가 등 취약계층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
-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그러한 실태 파악 이후 각 계층의 인권 증진사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증진 사업으로 구분하여 정책 개발 필요
- 또한 기존의 각 취약계층 별로 복지사업 등 중앙정부와 도의 다양한 사업을 인권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

[18]

05

인권 교육 및 인권 행정

05. 인권 교육 및 인권 행정

05_1 충남 인권교육 조사 의미

- **충남의 인권 교육: 적은 경험과 높은 의향**

- 충남도민은 인권교육을 직접 받아본 경험은 적지만,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비율이 높고, 인권교육을 받을 의향도 높음
- 또한 인권교육의 정규화와 모든 도민의 인권교육 실시에 대해서도 긍정적
- 인권교육의 주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인권 교육의 주제는 인권실태와 쟁점 등 다양한 욕구가 존재
- 인권교육은 도민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
- 따라서 기존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 교육의 형태, 주체, 상황, 대상을 구분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 상황과 단계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

05. 인권 교육 및 인권 행정



05_2 충남 인권행정 조사 의미

◦ 충남의 인권 행정: 상반된 평가와 인식도 부족

- 충남도민은 인권행정에 대해서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 시민단체와의 협력 등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이에 대한 부정적 응답도 상당 수 존재하여 상반되는 입장을 보임
- 충남이 실행하고 있는 인권증진제도에 대해서 충남도민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
- 충남의 행정에서 부족한 점은 공무원 마인드, 제도 미비, 도민 인권의식
- 인권행정은 충청남도의 인권증진을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인권증진을 위한 행정 제도의 정비와 인권문화의 확산을 위한 시민사회, 도内外의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1]

06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과 향후 과제

06.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과 향후 과제

06_1 인권실태조사 요약

분야	분석 요약	시사점
일반적 인권의식 전국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의식 평가는 전국=충남 제도 정비는 전국>충남 3년 인권개선 전국<충남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차원의 인권 증진 제도연구 제도의 실제 적용 가능성 탐색
인권 침해와 침해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권적 인권 침해 심각 인권악자의 인권 침해 소지 침해 원인 경제력, 학력, 성별 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양상으로 인권 침해 발생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침해의 다양한 원인, 계층, 양상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최선의 경로 선택하여 증진방안 마련 필요
인권 침해의 경우 대응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대응이 가장 일반적 당사자와의 직접 해결 방법 선호 향후에는 적극적 해결 의지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지 부족보다 절차/방법 모름 대응 방법 개발 및 교육 필요 교육과 홍보의 병행
인권취약계층 상황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청소년, 장애인,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모두 차별 존재 차별은 일상, 경제, 복지, 사회참여 모든 영역에서 존재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 계층별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상황 조사 조사 내용을 종합 지역 차원의 인권증진 내용 도출

[23]

06.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과 향후 과제

06_1 인권실태조사 요약

충남의 인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교육 경험은 낮음 교육의향과 필요성 긍정 교육 주체와 대상에 다양성 인정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대상, 주체, 상황에 맞는 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
충남의 인권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의 인권보장, 노력에 긍정적 제도정비, 거버넌스에 긍정적이나 많은 부정적 평가 인권제도에 대한 인지도 낮음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차원의 행정적 욕구 파악 제도 정비 방안 마련
기본계획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증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지방정부-시민사회-타시도-도민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인권문화 조성과 인권교육 체계 정비 및 실행 방안 마련 	

[24]

06.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과 향후 과제

■ ■ ■ ■ ■

06_2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다른 시도의 기본계획 분석

◦ 서울인권정책 1차 기본계획(2013)

- ▶ 비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나나나)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존중받는 행복한 서울
- ▶ 서울시 기본계획의 방향
 - 서울시 행정에 인권관점을 도입한 인권정책의 청사진
 -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중점 정책
 - 광범위한 시민참여를 통한 계획 수립
- ▶ 서울시 인권계획의 특징 및 시사점
 - 인권관점의 정책방향 수립
 - 기존사업을 인권적으로 재해석하고 구조화
 - 의미 있는 기존사업 확대 발전하고, 기존의 문제 있는 행정관행 개선

[25]

06.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과 향후 과제

■ ■ ■ ■ ■

06_2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다른 시도의 기본계획 분석

◦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2011)

- ▶ 비전: 공감과 창조의 인권도시 광주
- ▶ 목표
 - 시민의 삶의 질과 인권을 높이는 '인권의 실질화'
 - 광주의 가치와 품위를 높이는 인권정책
- ▶ 지향점
 - 참여공동체: 시민 모두가 권리주체로 참여하는 인권도시
 - 돌봄공동체: 사회적 배려와 나눔으로 삶이 안정된 인권도시
 - 연대공동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차별을 없애는 인권도시
- ▶ 광주광역시 인권기본계획의 특징 및 시사점
 - 인권을 지역사회의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설정 시도
 - 실질적 의미를 지닌 시민의 생활단위에서 인권 정책의 실질화 시도
 - 광주의 인권도시 브랜드화 시도
 - 광주의 역사적 자원(5.18 민주화 운동)을 활용한 인권 정책 시도
 - UN과 세계인권도시 포럼 등 국제적 공인 획득을 위한 정책적 시도로 많은 인권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도, 이로 인해 일상에서의 인권증진을 위한 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

[26]

06.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과 향후 과제

■ ■ ■ ■ ■

06_2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다른 시도의 기본계획 분석

◦ 울산 동구 인권기본계획(2011)

- ▶ 비전: 노동과 인권이 어우러진 인권도시 동구
- ▶ 목표: 인권존중 기초자치단체 실현
- ▶ 추진전략
 - 인권친화적 시민의식과 인권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인권교육 강화
 - 노동과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인권도시 동구의 미래상 구현
 - 지역생활밀착형 분야별 인권실천계획 수립
 - 동구 인권도시 선언 및 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
- ▶ 울산동구 인권계획의 특징 및 시사점
 - 지역 인권역량에 대한 종합적 파악을 통해 관련된 법, 제도, 관행의 개선을 선도
 - 노동자 밀집지역으로서의 지역성 고려하여 노동과 인권의 가치의 조화
 - 구체적인 실태 및 의식 조사가 선행되지 않고 진행되어 사업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실제 시행에 있어서 어려움 존재

[27]

06.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과 향후 과제

■ ■ ■ ■ ■

06_3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다른 시도의 기본계획 분석

◦ 서울 성북구 인권기본계획(2013 진행 중)

- ▶ 비전: 인권도시, 성북
- ▶ 목표: 인권이 실상화 된 도시, 인권도시 성북
 - 지속가능한 인권증진 구조 창출
 - 지역사회의 인권역량 강화
 - 지역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 전제
- ▶ 추진전략: 단계적 추진, 총체적 접근, 인권 거버넌스 구축
 - ▶ 서울 성북구 인권계획의 특징 및 시사점
 - 기본권에 근거한 인권계획의 시행하려는 시도, 특히 최저생계의 보장을 인권을 위한 기본권의 범주에 포함
 - 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하여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를 구분
 - 인권지표의 개발 및 시행 등 계획의 지속가능성과 지역밀착형 현안 중심의 사업추진

[28]

06.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과 향후 과제

■ ■ ■ ■ ■

06_4 다른 시도의 기본계획 분석 함의

- **실질적 삶의 영역에서 최대주의 관점의 인권의 구현 시도**
- **인권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인권 정책 시도**
 - ▶ 서울시의 경우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라는 모토로 인권의 보편성 실현을 위한 계획하고 있고 이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
 - ▶ 성북구의 경우 기본권을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으로 구분하여 계획수립을 시도
-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인권 정책 시도**
 - ▶ 광주의 경우 5.18이라는 지역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독자적 정책영역으로서 인권정책 추구
 - ▶ 울산 동구의 경우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노동과 어우어진 인권 계획 수립
- **기존 다른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고, 지속가능한 인권정책 시도**
 - ▶ 인권 정책은 기존의 정책, 특히 복지 정책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음
 - ▶ 기존의 정책 사업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조명, 이를 사업으로 재구조화하여 의미 있는 기존사업을 확대 발전시킴
 - ▶ 일회적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권정책의 추진

[29]

06.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과 향후 과제

■ ■ ■ ■ ■

06_5 인권의식 실태조사와 다른 시도의 기본계획 도출된 원칙

- **[도민의 삶의 밀착성]** 행정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실무자들의 현장에 바탕을 둔 정책의 수립
- **[기본권 보장의 최적화 접근]** 충남도민 누구도 예외 없이 기본권에 대해 적극적이고 최대한 보장하는 정책 수립. 특히 기본권에 대한 보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정책 필요
- **[지역의 특수성]**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권리이자, 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존중되어야 함. 따라서 삶의 터전이 되는 지역의 특수성에 기초한 정책 수립
- **[상호 보완성과 지속가능성]** 인권정책은 복지정책 등 기존의 정책과 세부 사업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기존의 정책을 인권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확대 발전시키고, 일회적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인권증진 정책 수립

[30]

06.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과 향후 과제



06_6 충남 인권증진기본계획 구상(안)

비전	일상생활 속에 인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충남			
목표	더불어 함께하는 인권	인권 제도정비	인권 문화 조성과 확산	인권 거버넌스
세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취약계층 인권 증진• 인권취약계층 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권친화적 행정 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 정비• 인권감수성 높이는 교육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사회와의 협력 적 네트워크 구축• 시민 참여에 기반 한 인권 문화조성

[31]

06.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과 향후 과제



06_7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세부 사업(안)

부 문		사 업 명	기존사업관계	
			기존	신규
더불어 함께하는 인권 (인권취약계층 인권증진)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친화적 일자리 창출• 독거노인 대상 돌봄 서비스 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노동인권(아르바이트) 개선•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멘토 시스템• 특별활동에 청소년 의견반영체계 마련		●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친화적 일자리 구축• 학교 내 장애인 교육 지원• 장애인 이동권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민(노동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언어장벽 없애는 통역지원 서비스• 다문화 가족 아동 교육 지원• 민·관 협동 이주민 의료서비스	●	
			●	●

[32]

06.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과 향후 과제



06_7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세부 사업(안)

인권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인권상담 센터 운영• 내포신도시 인권친화 공간조성• 투표편의시설(노인·장애인·이주민) 확보• 인권피해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 ● ● ● ●
	행정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도 인권담당관 설치•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 구축• 인권친화적 행정체계 구축	● ●
	안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 안전체계 정비• 생명존중(자살예방) 체계 구축	● ●

[33]

06.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과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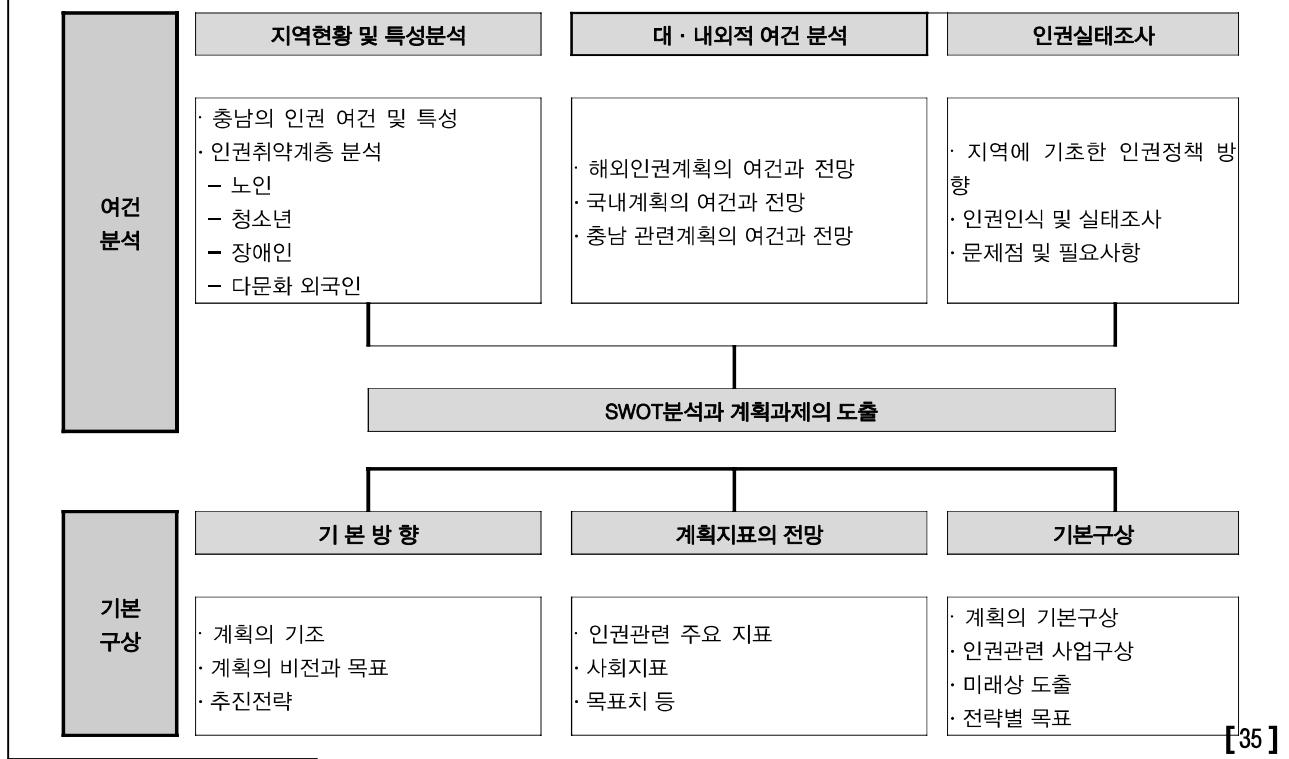
06_7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세부 사업(안)

인권문화 조성과 교육	인권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교사 양성• 인권교육 시민단체 지원	● ● ●
	인권교육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인권교육 의무화• 도민대상 인권아카데미 운영• 도내 기업 대상 인권 교육	● ● ●
	시민사회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사회와 인권협의회 정기개최• 교육, 상담 등에 NGO 협력체계 구축• 도내 인권 NGO 네트워크 지원• 국내/국제 인권 네트워크 구축• 이주민 정착지원 민·관 네트워크구축	● ● ● ● ●
인권 거버넌스	도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민 참여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 음부즈만 제도 운영• 도민과 함께 하는 인권행사 정례화	● ● ●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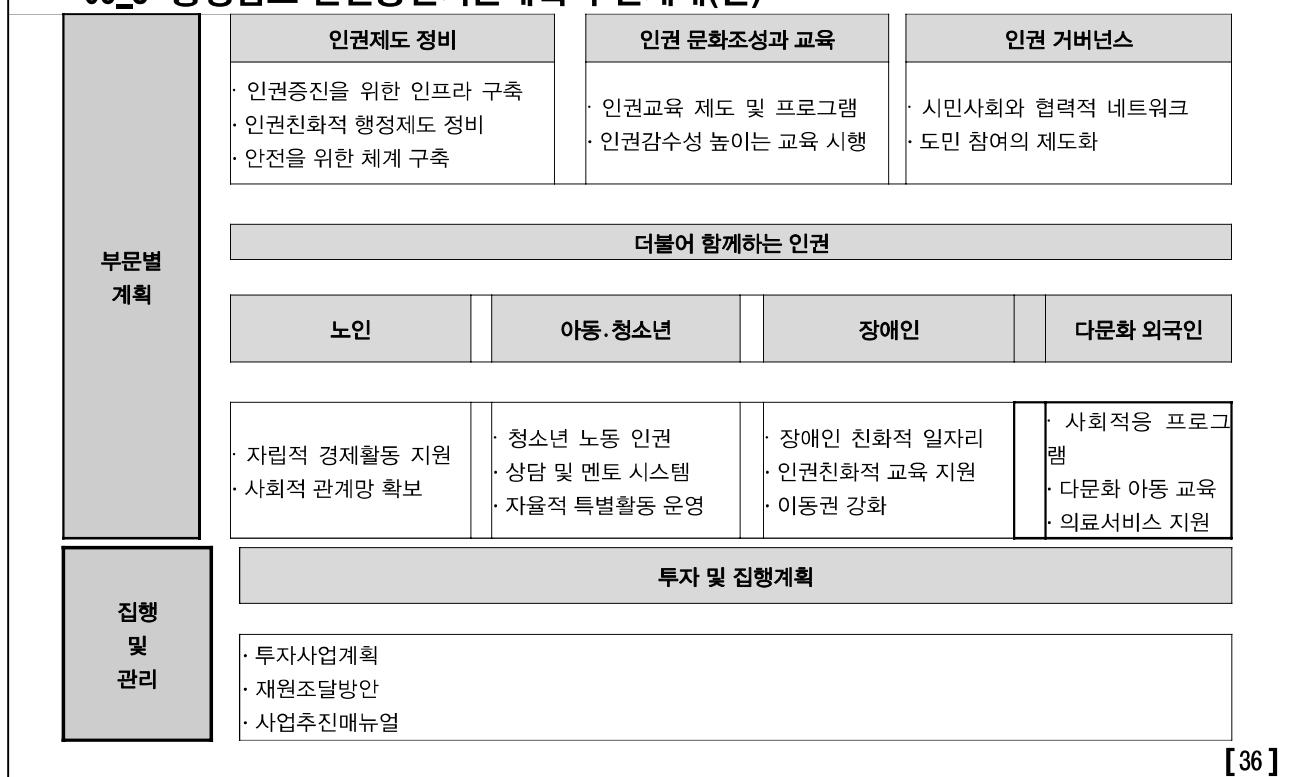
06.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과 향후 과제

06_8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추진체계(안)



06.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과 향후 과제

06_8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추진체계(안)



06.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과 향후 과제



06_9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안)의 한계

◦ 충남의 인권정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현재의 구상(안)은 충남 인권의식 실태조사와 다른 시도의 인권기본계획, 충남도의 다른 정책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서 인권취약계층, 인권활동가 등의 실태 및 요구를 반영하지 못함

◦ 충남 인권증진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조율 미진

- 충남 인권증진계획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행정담당자-인권 시민사회단체-인권취약계층-도민)들의 의견조율이 충분하지 않음

◦ 인권의 지역적 개념에 대한 이해의 불충분

- 인권의식 실태조사는 학계에서 논의되는 추상적이고 이론적 인권개념을 바탕으로 충남도민의 일반적 인권의식에 대한 조사만 시행
- 다른 시도의 기본계획도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권도시'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도농이 혼재되어 있는 충남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존재

◦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 공청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등과 실태조사를 거쳐 충남의 여건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충청남도 인권증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37]

06. 인권의식 실태조사 시사점과 향후 과제



06_9 실태조사와 계획(안)의 한계

◦ 향후 사업 추진 방향

- 이번 보고의 결과와 계획안에 대한 인권증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 후 최종 계획을 수립하여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의 기초로 활용
- 이어지는 충남 인권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시간을 두고 보다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 이를 위해 공청회, 토론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부문과의 소통 필요
- 인권취약계층의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
 - 특히 충남의 경우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자 등 해안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대응이 필요
 -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식조사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되는 노동 부문(비정규직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의 조사와 인권증진방안 모색 필요
- 정책 집행 공무원과 현장 활동가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서의 필요에 의해 도출되는 사업과 실제 수행 가능한 정책을 연결하는 계획 수립

[38]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DI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M E M O

